

목포해양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

[시행 2021.5.20.] [목포해양대학교 규정 제831호, 2021.5.20., 일부개정]

제정 2011.12.29(제474호)

전부개정 2018.02.27.(제655호)

일부개정 2021.05.20.(제831호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제7조의3에 의거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군단의 설치 및 편성) 학생군사교육단(이하 “학군단”이라 한다.)은 목포해양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총장 직속기구로 두며, 편성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으로 한다.

제3조(학생군사교육단장의 임무) 학생군사교육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.)은 총장과 협조하여 군사교육요원 및 학군사관후보생을 지휘·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학군사관후보생(이하 “후보생”이라 한다.)의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
2. 후보생 선발업무
3. 후보생의 양성과 관련된 업무
4.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임무는 해군 학군단 운영규정을 따른다.

제2장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

제4조(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) ①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.

② 군사교육요원은 단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후보생의 군사학 교육과 훈육 및 단장이 부여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.

③ 군사교육요원은 입영교육 기간에 해군 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에 파견되어 후보생 교육훈련을 담당한다. <개정 2021.5.20.>

제3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

제5조(군사교육) ① 군사교육은 교내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<개정 2021.5.20.>

② 교내교육은 현역인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.

③ 입영교육은 기초군사교육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21.5.20.>

제6조(교내교육) ① 교내교육은 교내에서 총장 책임 하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군사학 교육은 주 6시간을 2회로 분산하여 실시하며,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배정한다.

③ 군사학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매학기 마다 3학점(총 12학점)을 부여한다.<개정 2021.5.20.>

④ 규정된 군사학 시간 이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단장이 따로 정하는 시간에 실시할 수 있다.

1. 특별 정신교육, 보강수업 및 학군단의 공식 행사

2. 교육훈련, 훈육활동, 체력단련, 가입단 및 하·동계 입영교육 사전교육<개정 2021.5.20.>

3. 기타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등 <개정 2021.5.20.>

⑤ 해양공과대학 후보생은 교내교육 기간 중 실습선의 연안항해 및 국제항해 실습 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총장의 승인 하에 승선하여 실습할 수 있으며, 실습의 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입영교육) ① 후보생의 군부대 입영교육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한다.

② 입영교육은 특별학기 교과목으로 기초군사교육단에서 실시하는 가입단 및 하·동계 입영교육 이수 시 마다 1학점(총 5학점)을 부여한다.

③ 본교는 입영교육 및 입영교육 사전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1.5.20.]

제8조(학군사관후보생 생활) ① 후보생의 일과진행에 관한 사항은 승선생활관장 및 기숙사사감장과 협의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후보생에게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해군학군사관후보생의 복제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. 단, 다른 규정에 복장 착용에 관하여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의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착용 시기 및 절차를 따로 정한다.

③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후보생 생활은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훈육 및 후보생 생활 지침서에 따른다.<개정 2021.5.20.>

제9조(후보생의 징계) ① 후보생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경우, 단장을 학생징계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으며, 입학학생처장은 징계처분 결과를 단장에게 통보한다.

② 후보생의 학군단 내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훈육 및 후보생 생활 지침서에 따른다.<개정 2021.5.20.>

제4장 우수인력 획득 지원

제10조(홍보업무 지원) 본교는 우수한 후보생 확보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우수인력 획득 지원) ① 본교는 우수한 학생이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

② 모집 및 선발 시 우수자원을 조기 선별할 수 있도록 학부(과)장, 승선생활관장 또는 사감장은 별지 제1호에 따라 우수자원을 추천할 수 있다.

제12조(호기대의 편성 및 지원) ① 단장은 후보생으로 호기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.

② 호기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홍보 및 교내 행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본교가 주관하는 교내외 행사
2. 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
3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장 교육시설 및 예산 지원

제13조(교육시설 및 장비 지원) 본교는 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교재창고
2.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및 생활관, 집기류
3. 후보생의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
4. 후보생 자치위원실
5. 후보생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
6. 후보생 훈련에 필요한 연병장
7. 기타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, 차량 지원

제14조(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) 본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·외 탐방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1.5.20.>

제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

제15조(학군단 운영위원회 구성) ① 학군단의 운영 및 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입학학생처장, 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총장이 임명하며, 필요 시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교육훈련처장을 참관인으로 배석시킬 수 있다.<개정 2021.5.20.>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으로 하며, 회의소집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6조(심의·의결 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
2.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·개정
3. 후보생을 위한 초빙강연 지원 및 모집 홍보활동 지원
4. 기타 위원장 및 단장이 발의한 학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제17조(위원회의 개최) 위원회는 매년 5월 및 10월 첫째 주에 정기회의를 실시하며, 필요 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.<개정 2021.5.20.>

제18조(월례회의) ① 월례회의는 학군단의 운영 및 후보생 교육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.

② 월례회의는 입학학생처장 주관으로 실시하며 학생팀장, 단장 및 학군단 교무/행정

담당이 참가하며, 필요에 따라 참가자를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1.5.20.>

③ 월례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며, 필요 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군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군 학군단 운영규정을 따른다.

부칙(제655호, 2018.02.27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831호, 2021.05.20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] <개정 2021.5.20.>

추천서

인적사항	학부(과)		성명	
	학번		성별	

추천사유

※ 생활태도, 학업성취도, 체력검사 결과(승선학과),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단히 기술

위 학생을 해군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직책 _____ 성명 _____ (서명)

학생군사교육단장 귀하